

2025년 하반기 한국토지주택공사 신입사원(6급) 공채(일반)

1. 모집분야 및 선발인원(총 12명)

구분		NCS기반 직무설명서		일반채용
채용형 인턴 (정규직 전환시 일반직 6급)	사무직	행정		4
	기술직	토목군	토목	4
			조경	
		건축군	건축	4
			기계	
			전기	
			화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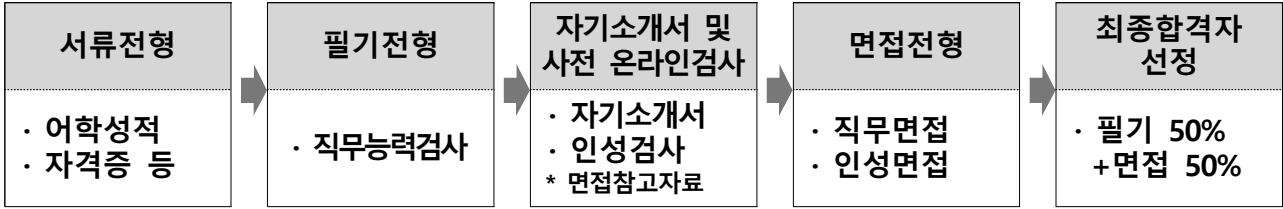
- 채용형인턴은 인턴기간(약 4개월)의 교육 및 근무평가 등 전환심사를 거쳐 적격자에 한하여 정규직 전환 예정(세부 전환기준 및 일정은 별도 전환계획에 따름)
- 모집분야간 중복지원(예 : '사무직-행정' 분야 지원 후 추가로 '기술직-토목군' 지원시 중복지원 처리됨) 하거나, 금회 채용 시 일괄 공고하는 5급 공채(일반·보훈)와 중복지원 시 모두 불합격 처리됨에 유의
- 기술직 지원자는 세부 모집직무(예: 토목군-토목, 건축군-기계 등)를 선택해야 함
- 근무지는 본사(진주 등), 전국 지역본부 및 사업본부 등임
- 처우 : 기간제근로자(채용형인턴)로서 월 급여 249만원(세전). 이후 정규직 전환 시 6급 사원 처우

2. 지원자격

구분	주요내용
공통 사항	학력 ○ 고교졸업예정자 및 최종학력이 고졸인 자(고교 검정고시 합격자 및 대학 중퇴자, 대학 재학·휴학자 포함) * 공고일 기준 대학(전문대학 포함) 졸업자 및 졸업학년 2학기 재학 이상인 자는 지원할 수 없으며, 별도 수업 없이 대학 졸업이 가능한 경우도 졸업한 것으로 간주하여 고졸자에서 제외
	성별, 신체조건, 연령 등 ○ 제한없음
	병역 ○ 병역을 기피한 사실이 없는 자 ※ 병역 미필자도 지원 가능하며, 현재 군 복무중인 자는 '25.12.28까지 전역예정자로서 전형절차에 응시 가능한 경우에 지원 가능
	기타 ○ 공사 직원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상세보기 #1] ○ '25.12.29부터 전일근무가 가능하고 인턴기간 중 4주 내외 합숙교육이 가능한 자

- ※ 고교졸업예정자의 범위 : '26.2월까지 졸업이 가능한 자로서 필기시험 합격 시 학교장의 졸업 예정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채용형 인턴 임용일('25.12.29)부터 정상 근무가 가능하여야 함
- ※ **6급공채 자격과 관련하여 허위 사실이 발견된 경우 합격취소 및 직권면직될 수 있음**

3. 전형절차 (전형별 합격자 등에 한하여 다음 절차 응시)



※ 필기합격자를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인성검사 결과는 면접위원에게 제공되는 점을 반드시 참고하여 응시, 또한 최종합격자를 대상으로 신원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결격사유 발생 시 합격취소

□ 전형별 절차 세부내용

전형	세부내용																		
서류 전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형내용 : 어학성적, 자격증 등 평가 [상세보기 #2]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계</th> <th>어학성적</th> <th>자격증 등</th> <th>가산점</th> </tr> </thead> <tbody> <tr> <td>100 + 가산점</td> <td>10</td> <td>90</td> <td>[상세보기 #3]</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격자 선정 : 어학성적·자격증 등 평가 점수에 가산점을 합산한 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모집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의 30배수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점자 전원 선발, 서류전형 면제자는 배수 외 추가선발 - 항목별 만점의 40%를 기본점수로 부여 (예시) 어학점수 미제출 시 10점의 40%(4점) 획득 	계	어학성적	자격증 등	가산점	100 + 가산점	10	90	[상세보기 #3]										
계	어학성적	자격증 등	가산점																
100 + 가산점	10	90	[상세보기 #3]																
필기 전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형대상 : 서류전형 합격자 ○ 전형내용 : 직무능력검사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colspan="2">구분</th> <th>문항수</th> <th>시간</th> <th>평가내용</th> </tr> </thead> <tbody> <tr> <td>직무능력검사</td> <td>NCS 직업 기초능력</td> <td>40문항</td> <td>60분</td> <td>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수리능력 등</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직 전체 NCS 직업기초능력검사에 공통으로 '안전' 분야 일부 출제 ○ 배점비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무직, 기술직 모두 NCS 직업기초능력(100%)으로 평가하나, 문제유형은 다를 수 있음 ○ 합격자 선정 : 직무능력검사 점수에 가산점을 합산한 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모집분야별 선발인원의 2~4배수 선정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최종 선발인원</th> <th>2명 이하</th> <th>3~4명</th> <th>5명 이상</th> </tr> </thead> <tbody> <tr> <td>합격자 선정배수</td> <td>4배수</td> <td>2.5배수(반올림)</td> <td>2배수</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락기준 적용 등으로 합격자 예정인원에 미달할 수 있음 - 동점자 전원 선발 - 가산점을 제외한 NCS직업기초능력 평가결과가 만점의 40% 미만 시 과락(불합격) 처리 	구분		문항수	시간	평가내용	직무능력검사	NCS 직업 기초능력	40문항	60분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수리능력 등	최종 선발인원	2명 이하	3~4명	5명 이상	합격자 선정배수	4배수	2.5배수(반올림)	2배수
구분		문항수	시간	평가내용															
직무능력검사	NCS 직업 기초능력	40문항	60분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수리능력 등															
최종 선발인원	2명 이하	3~4명	5명 이상																
합격자 선정배수	4배수	2.5배수(반올림)	2배수																
자기 소개서 제출 및 사전 온라인 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형대상 : 필기전형 합격자 - 필기전형 합격자는 기한 내 자기소개서 제출, 인성검사를 응시하여야 하며, 기한 내 미응시할 경우 지원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면접전형 응시 불가 ※ 제출된 자기소개서에 블라인드 위반사항 발생 시 블라인드 처리 [상세보기 #4]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구분</th> <th>시행방식</th> <th>내용</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자기소개서</td> <td>온라인 작성·제출</td> <td>지원포부, 경험·경력활동 및 직업기초능력 기술</td> <td>· 평가점수 미반영</td> </tr> <tr> <td>인성검사</td> <td>온라인 필기문답</td> <td>적극성, 성실성, 적응위험 요인 등 인성 및 적응관련 항목 평가</td> <td>· 면접 위원에게 제공 하여 참고자료 활용</td> </tr> </tbody> </table>	구분	시행방식	내용	비고	자기소개서	온라인 작성·제출	지원포부, 경험·경력활동 및 직업기초능력 기술	· 평가점수 미반영	인성검사	온라인 필기문답	적극성, 성실성, 적응위험 요인 등 인성 및 적응관련 항목 평가	· 면접 위원에게 제공 하여 참고자료 활용						
구분	시행방식	내용	비고																
자기소개서	온라인 작성·제출	지원포부, 경험·경력활동 및 직업기초능력 기술	· 평가점수 미반영																
인성검사	온라인 필기문답	적극성, 성실성, 적응위험 요인 등 인성 및 적응관련 항목 평가	· 면접 위원에게 제공 하여 참고자료 활용																

면접 전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형대상 : 필기전형 합격자 중 기한 내 자기소개서 제출, 사전 온라인 검사 및 [8. 제출서류 안내] 서류제출 완료자 ○ 전형내용 : 직무면접, 인성면접 분리 실시 			
	구분	내용	배점	평가항목
	대면 면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 발표면접 (多對一) - 직무별 상황과 관련한 다양한 업무 자료 분석 및 발표에 대해 평가 	50%	정보해석 및 처리능력, 문제해결 및 논리전개 능력 등
인성 면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단면접 (多對多) - 자기소개서, 인성검사 등 기반으로 인성요소 등에 대해 평가 	50%	직업관, 가치관, 사회적 책임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무 및 인성면접 평가점수(가산점 제외) 중 한 가지라도 만점의 40% 미만 시 과락 (불합격) 처리 - 면접진행 중 블라인드 위반 시 감점 및 탈락 등 불이익 있음에 유의 ※ 면접방식 등 세부내용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이후 홈페이지 안내 예정 				

최종 합격자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종합격자 선정 : 필기전형 50%(가산점 포함) + 면접전형 50%(가산점 포함)를 합산한 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모집분야별 선발인원의 1배수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형별 평가점수(가산점 제외)가 만점의 40% 미만인 경우 합격자에서 제외 - 동점자 처리기준(우선선발순) : ①취업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법 등) → ②면접전형(가산점 제외) 고득점자 → ③필기전형(가산점 제외)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하고, 필기전형까지 동일한 경우 전원 선발 ○ 예비합격자 : 모집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의 50%(소수점 반올림, 최소 1인 선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개월('26.2.18(수) 16시)까지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 한해 예비합격자 순위에 의거 임용하고, 동점자 우선순위에서 필기전형까지 모두 동점자는 전원 임용하되 차순위 임용예정 인원에서 차감 <p>※ 최종합격자를 대상으로 신원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결격사유 발생 시 합격 취소(신원조사 기간 소요 등으로 임용일 이후 결격사유가 확인될 수 있음)</p> <p>※ 단, 이전지역인재 결원의 경우 채용목표제 적용기준 및 방법에 따름</p> <p>※ 득점 점수는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산정(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며, 모든 전형에 동일하게 적용</p>
--------------------------	--

4. 채용시 우대제도 **[상세보기 #3]**

- **특별우대 가산점** : 취업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법 등), 장애인,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 가족, 자립준비청년, 이전지역인재 등 해당자에게 가산점 부여
 - ※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적용
 - ※ 특별우대 가산점은 지원서 접수 마감 전일('25.9.29(월))까지 취득한 자격에 한해 인정
- **일반우대, 청년인턴 가산점** : 우대자격증 소지자, 수상경력 보유자, LH 우수/성실인턴 및 탁월인턴 등 해당자에게 가산점 부여 또는 서류전형 면제
 - ※ 일반우대 가산점은 지원서 접수 마감 전일('25.9.29(월))까지 취득한 자격(합격일자 기준)에 한해 인정
 - ※ 청년인턴 및 수상경력 가산점은 해당 모집공고에 고지된 가산점 부여기준 및 조건 등을 명시한 경우에만 고지된 기준 및 조건 등에 따라 인정

5. 지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5.9.22(월) 14:00 ~ '25.9.30(화) 17:00

□ **접수방법** : 공사 홈페이지(www.lh.or.kr)에서 온라인으로만 접수

※ 접수 마감일에는 다수 동시접속에 따라 원활한 접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감일 이전에 여유있게 지원하시기 바라며, **작성 중인 지원서도 마감일 17:00 정각까지 제출완료되지 않은 경우 접수되지 않으니 반드시 지원서 제출 완료 및 수험번호 부여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원활한 접수를 위하여 필요사항(관련일자, 등록번호 등)을 사전에 확인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6. 채용목표제

□ **유형 및 목표비율**

대상	이전지역인재	지역균형인재	양성평등
목표비율	30%	35%	30%
적용단계	서류전형 ~ 최종합격자 선정		필기전형

* **연간 채용인원이 5명 이하인 모집분야는 채용목표제를 적용하지 않음**

※ 채용목표제 적용순서는 이전지역인재 → 지역균형인재 → 양성평등

□ **세부 적용방법**

채용목표 유형	적용방법
고졸 이전지역인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대상 : 최종학력(고졸 이하) 기준 경상남도, 울산광역시 소재 학교 졸업(예정)자 * 이전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다른 지역 대학에 재학(휴학)중인(졸업예정자 제외) 자는 포함[상세보기 #5] ○ 적용방법 : 각 전형단계* 및 모집분야별 이전지역인재 합격인원 비율이 선발 예정인원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고득점자순(가산점 포함)으로 30%에 도달할 때까지 당초의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선발 * 단, 아래 2가지 조건 모두 충족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필기전형 및 최종합격자 선정시 '모집분야별 합격자 최저점수 -5점 이상' 득점(가산점 포함) ② 전형별 합격 최소요건(가산점 제외 후 만점의 40% 이상) - 득점 점수는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산정(셋째자리에서 반올림) <p>※ 연간 채용인원이 5명 이하인 모집분야에는 적용하지 않음</p>
지역균형인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방법 : 전형단계별*로 전체 모집인원**에서 지역균형인재의 합격자 비율이 35%에 미달할 경우 목표인원에 도달할 때까지 선발 * 단, 아래 2가지 조건 모두 충족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필기전형 및 최종합격자 선정시 '모집분야별 합격자 최저점수 -5점 이상' 득점(가산점 포함) ② 전형별 합격 최소요건(가산점 제외 후 만점의 40% 이상) - 득점 점수는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산정(셋째자리에서 반올림)
양성평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방법 : 필기전형* 전체 모집인원**에서 남성 또는 여성의 합격자 비율이 30%에 미달할 경우 목표인원에 도달할 때까지 선발 * 단, 아래 2가지 조건 모두 충족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필기전형 합격자 선정시 '모집분야별 합격자 최저점수 -5점 이상' 득점(가산점 포함) ② 필기전형 합격 최소요건(가산점 제외 후 만점의 40% 이상) - 득점 점수는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산정(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전체 모집인원) 지역균형인재 및 양성평등 목표적용 시 전체 모집인원은 금회 일괄 공고하는 5급 공채(일반·보훈) 및 6급 공채(일반)의 총 모집인원을 기준으로 함

*** 고졸 지역인재 정의**

- **이전지역인재** : 최종학력(고졸 이하) 기준 경상남도, 울산광역시 소재 학교 졸업(예정)자 (국토교통부 「이전지역인재 채용목표제 운영지침」을 따름)
 -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의 경우 '26.2월까지 졸업예정인 자에 한하여 인정
 - * 이전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다른 지역 대학에 재학(휴학)중인(졸업예정자 제외) 자는 포함
 - **지역균형인재** : 지방대학 학사과정에 재학 중인 자에 해당하며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인 자는 포함되지 않음(「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을 따름)
- ※ 블라인드 채용에 따라 학력사항을 기입하지 않고 채용목표제(이전지역인재, 지역균형인재) 해당 여부만을 표시하게 되며, 오류 또는 허위 입력으로 판명될 경우 부적격처리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상세보기 #5\]](#)의 요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전형별 주요일정

전형일정		일시	비고
서류전형	지원서 접수	'25.9.22(월) 14:00 ~ 9.30(화) 17:00	홈페이지(www.lh.or.kr)에서 온라인으로만 접수
	합격자 발표	'25.10.16(목) 16:00 이후	공사 홈페이지에서 개별 확인 및 안내
필기전형	필기전형	'25.10.26(일)	시험장소 : 서울, 진주
	합격자 발표	'25.11.6(목) 16:00 이후	공사 홈페이지에서 개별 확인 및 안내
면접전형	자기소개서 제출, 사전 온라인 검사 (인성검사), 서류제출 등	'25.11.6(목) 16:00 이후 ~ 11.10(월) 17:00	공사 홈페이지에서 개별 확인 및 안내
	면접전형	'25.11.17(월) ~ 11.19(수)	필기전형 합격자 발표 이후 일정, 시행장소(서울 예정), 시험방법 등 공지
최종합격자 발표, 신원조사 등		'25.12.18(목) 16:00 이후	공사 홈페이지에서 개별 확인
임용, 교육 등		'25.12.29(월) ~	합격자에 한해 별도 공지 예정

-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공사 홈페이지(새소식-채용정보-공지사항) 게시판에 공지
- ※ 필기시험 장소(서울, 진주)는 입사지원시 선택하며, 장소별 수용인원 한도내에서 입사지원서 선(先)제출자에게 우선권 부여

8. 제출서류 안내

- 입사지원사항의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필기전형 합격자'에 한해 증빙서류 요구
 - 증빙서류 제출시기 등과 관련한 사항은 필기전형 합격자에게 별도 공지 예정
 - 기한 내 미제출 시 입사 의사 없음으로 간주하여 불합격 처리

□ 제출서류

구 분		제출서류	제출대상
필수 자격	학력 관련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 학력상황에 따른 아래 서류 가. (대학 재학 중인 자) 재학관련 증명서(재학/휴학/재적/제적 증명서 등) 나. (고교 졸업자) 졸업증명서, 대학(전문대 포함) 학자금 대출·장학금 신청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발급받아 제출(발급용도는 공공기관 취업지원용, 제출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LH로 신청) 다. (고교 재학 중인 자) 졸업예정증명서 	전체 지원자
특별 우대	취업지원대상자 (보훈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이 상이등급기준 해당자)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 (그 외)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 발급시 제출처에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LH 필수 기재 	해당자
특별 우대	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이 상이등급기준 해당자)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 장애인증명서 * 중증장애인으로 선택한 경우 중증장애인확인서 제출 	해당자
	저소득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증명서 ○ 한부모가족증명서 	해당자
	북한이탈주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해당자
	다문화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기타 국적취득 자료 등 다문화가족 입증서류 * 필요시 추가자료 요구할 수 있음 	해당자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아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수급자 확인서 또는 사회보장급여 통지서 * 위 서류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시설 등 퇴소 증빙서류 	해당자
	이전지역인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종학교(고졸 이하) 졸업(예정)증명서 * 필요시, 재학(휴학)·제적증명서 등 추가 징구 	해당자
일반 우대 및 서류 평가	자격증	○ (계량평가) 서류전형 계량평가 관련 자격증 등	해당자
		○ (고급자격) 가산점 부여대상 자격증 증빙서류	해당자
	공모전 수상자	○ 가산점 부여 대상 공모전 수상내역 증빙서류	해당자
	어학성적	○ 어학성적표	해당자
	지역균형인재 채용목표제	○ (대학 재학 중인 자) 재학관련 증명서(재학/휴학/재적 증명서 등)	해당자
	병역사항 및 양성평등 채용목표제	○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포함)	전체 지원자

※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병역사항 등 : 증빙서류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정부민원포탈 정부24(plus.gov.kr)등을 통해 인터넷으로 발급하여 제출[필기전형 발표일(25.11.6(목)) 이후 발급분에 한함]

※ 입사에 필요한 정보 및 서류만 제출받으며, 제출 서류 등은 면접 심사위원에게 제공되지 않음

※ 입사지원서 상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불합격 처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9. 이의신청 안내

- 접수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간('25.12.18(목)~'26.1.2(금))
- 접수방법 : 「공사 홈페이지(www.lh.or.kr) - 새소식 - 채용정보 - 공지사항」 게시글 에서 신청
- 처리안내 : 내용검토 및 답변 처리(단, 이의신청 처리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이의신청 처리 예외사유]
 - 1) 금번 채용과 무관하거나 이의제기와 상관없는 채용제도, 절차 등에 대한 문의 및 질의사항
 - 2) 응시자 정보, 출제위원·평가위원 등에 대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지적재산권(출제기관) 등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 3) 기타 상기 사유에 준하는 사항

10. 채용서류의 반환, 역량진단 보고서 제공

- 신청대상 : 최종 불합격자 중 채용서류의 반환, 역량진단 보고서를 제공받기 희망하는 자
※ 청구하지 않는 경우 청구기한 이후 파기(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보호법)
- 청구기한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간('25.12.18(목)~'26.1.2(금))
- 청구방법 : 「공사 홈페이지(www.lh.or.kr) - 새소식 - 채용정보 -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
- 반환 및 제공 일정
 - 채용서류의 반환 :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 발송(관련법에 의거 온라인 접수 서류는 미해당)
 - 역량진단 보고서 : 청구기한 마감일로부터 2주 이내 메일 발송

11. 유의사항 안내

- 입사지원서 접수시 작성요령을 반드시 숙지하고 지원서 제출 전에 자격증 등 각종 기재사항을 정확히 확인하여 오기재 또는 미기재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작성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서 허위작성, 증빙서류 위·변조 등 행위 발생 시 불합격 처리하고, 향후 5년간 우리공사 입사지원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블라인드 채용에 따라 입사지원서 작성시 이전지역 및 지역균형인재 해당여부, 자격증, 특별우대 관련 증명서 등은 철저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력요류 등에 따른 불합격 처리 등의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또한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시 직·간접적으로 학교명, 가족관계 등 개인 인적사항이 입력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발견시 임의 블라인드 처리 등)
- 시험장소, 시험내용, 감독관/면접관 등에 대해 사진촬영·화면캡처, 녹음·녹화 등으로 대외공개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 외 합격자 선정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각 전형단계별 전형내용은 공사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각 전형별 합격자 발표는 공사 홈페이지(www.lh.or.kr)를 통해 공고하며 별도 개별통지는 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별 득점점수 및 커트라인은 필기전형에 한해 공개하며, 최종 불합격자 중 희망자에 한해 역량진단 보고서를 제공합니다.

- 최종합격 시에는 재학 및 재직 등 여부에 관계없이 정상출근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또한, 합격자 발표 이후라도 예비소집 및 임용식, 입사교육 미입소 등 공사에서 요구하는 소집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 입사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전형단계별로 제출하도록 안내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입사가 제한될 수 있으며, 응시자격 등 확인을 위해 공고문에 제시된 서류 외에 별도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기한내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입사가 제한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증빙서류는 관계기관에 사실여부 확인 예정이며, 모든 지원자는 조회에 필요한 개인 정보제공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정규직 전환 세부기준 및 일정은 별도의 전환계획에 따르며, 성적이 기준에 미달하거나, 채용에 부적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합격자는 관계법령 및 내부규정에 따라 정규직 임용이후 부동산 등 보유재산에 대해 신고하여야 하며, 경우에 따라 부동산의 신규취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비소집시 관련된 내용의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합격취소 됩니다. 관련된 세부 사항은 예비소집시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입사시 공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시 합격취소 등 입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입사포기서를 제출받아 수리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미제출 또는 제출지연으로 차순위자에게 발생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아래의 경우 입사포기서 없이 입사포기처리 후 차순위자에게 입사기회를 부여합니다.
 - 예비소집 및 임용 일정이 사전에 공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단불참 후 별도의 확인서 없이 공지된 집합시간으로부터 6시간이 지난 경우
 - 입사포기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입사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입사포기 의사표시 시점으로부터 6시간이 지난 경우
- 우리 공사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문화 정착을 위해 인사 청탁 및 부정행위를 금지합니다.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통해 합격한 경우에 대해 관련 법령 및 사규 등에 따라 해당 지원자 사전배제, 합격 후에도 불합격 처리, 채용시자격을 제한하며, 관련기관에 해당사실 통보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채용비리 또는 합격자 선정 오류 등으로 피해자 발생시 피해자 구제방안에 따라 구제함을 안내드립니다.
- 문의사항이 많아 전화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채용공고 및 FAQ를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채용 콜센터(02-2038-6740, 6741, 67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채용공고에 기재된 내용은 개별적으로 안내·답변하지 않으므로 공고에 기재된 내용의 단순 확인 등의 문의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 9. 15.



한국토지주택공사

살고 싶은 집과 도시로 국민의 희망을 가꾸는 기업

상 세 보 기

[상세보기 #1] 공사 직원채용 결격사유

□ 인사규정 제9조(채용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따라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따라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삭제
10. 병역의무를 기피한 자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 취소된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5. 「공공주택특별법」 제9조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6. 「공공주택특별법」 제9조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된 자를 포함)

[상세보기 #2] 서류전형 평가 구성항목 및 기준

□ 서류전형 평가 구성항목 및 기준

구성항목		배점	세부기준 등
어학능력		10	· TOEIC, TEPS, TOEFL iBT(TOEIC 기준 일정 점수 이상) · TOEIC-S, TEPS-S, OPIc 일정 점수 이상 · 중국어, 스페인어, 독일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일본어 어학시험 일정 점수 이상 [아래 ① '어학성적 인정기준']
자격증 등 평가	직무능력	40	· [사무분야] 국어능력인증 4등급, KBS한국어능력 4+급, 한국실용글쓰기 3급 이상
			· [기술분야] 기술분야 관련 기능사 이상 자격증 보유자 [아래 ② '기술분야 직무능력항목 계량평가 인정 자격증목록']
	IT	25	·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컴퓨터 활용능력 1.2급
		20	·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서(구 1급) 이상
한국사	25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등급 이상	
	20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등급	

- * 항목별 만점의 40%를 기본점수로 부여 (예시) 어학점수 미제출 시 10점의 40%(4점) 득점
- * 모든 어학성적은 최종합격자 발표일('25.12.18)이 유효기간 내인 국내 정기시험으로, '23.12.18. 이후에 응시하고 지원서 접수 마감 전일('25.9.29)까지 성적을 발표한 시험에 한함(다만, 통합채용포털에 영어/외국어 사전등록한 경우에는 5년 인정)
- * 지원서 접수 마감 전일('25.9.29)까지 합격발표(취득)하고 최종합격자 발표일('25.12.18)이 유효기간 내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 *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유효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으며, 3등급 이상 자격을 취득한 경우 기간과 관계없이 인정

※ 상기 자격증 등 증빙자료를 면접전형 전 제출하여야 하며, 면접전형 이후 최종합격자 발표일 ('25.12.18) 전 개별 기관에 진위여부 확인 예정

① 어학성적 인정기준

외국어명	어학성적 인정기준
영어	TOEIC 700점 이상, TEPS 301점 이상 TOEFL iBT 80점 이상, TEPS-S 50점 이상, TOEIC-S IM2 이상, OPIc IM2 이상
중국어	新HSK 5급 180점 이상 또는 新HSK 6급 180점 이상, FLEX 700점 이상
스페인어	DELE B2 이상, FLEX 700점 이상
독일어	Goethe-Zertifikat B2 이상, FLEX 700점 이상
프랑스어	DELFB2 이상, FLEX 700점 이상
러시아어	FLEX 700점 이상
일본어	JPT 700점 이상, FLEX 700점 이상

* 모든 어학성적은 최종합격자 발표일('25.12.18)이 유효기간 내인 국내 정기시험으로, '23.12.18 이후에 응시하고 지원서 접수 마감 전일('25.9.29)까지 성적을 발표한 시험에 한함(다만, 통합채용포털에 영어/외국어 사전등록한 경우에는 5년 인정)

② 기술분야 직무능력항목 계량평가 인정 자격증 목록

- 아래 기능사 이상 자격증 보유시 서류전형-자격증 등 평가-직무능력 항목 40점 부여

모집직무	해당 자격증(기능사 이상)	
토목	기사	토목, 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해양공학, 콘크리트, 건설안전, 지적, 응용지질
	산업기사	토목,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콘크리트, 건설안전, 지적
	기능사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지적, 철도토목
조경	기사	조경, 자연생태복원
	산업기사	조경, 자연생태복원
	기능사	조경
건축	기사	건축, 건축설비, 실내건축,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건설안전
	산업기사	건축,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실내건축,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건설안전
	기능사	전산응용건축제도, 실내건축, 거푸집, 건축도장, 건축목공, 도배, 미장, 방수, 비계, 온수온돌, 유리시공, 조적, 철근, 타일, 건설재료 시험, 콘크리트
기계	기사	건축설비, 일반기계(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설비, 소방설비(기계분야), 승강기, 에너지관리, 가스
	산업기사	건축설비,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설비, 소방설비(기계분야), 승강기, 에너지관리, 가스, 배관
	기능사	배관, 컴퓨터응용선반,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전산응용기계제도, 정밀측정, 건설기계정비, 공조냉동기계, 설비보전(공유압, 기계정비), 승강기, 자동화설비, 피복아크용접, 가스팅스텐아크용접, 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 가스, 에너지관리
전기	기사	전기, 전기공사, 소방설비(전기분야), 무선설비, 정보통신, 승강기, 신재생 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산업기사	전기, 전기공사, 소방설비(전기분야), 무선설비, 정보통신, 승강기, 신재생 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기능사	전기, 무선설비, 승강기, 신재생 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화공	기사	화공, 건설재료시험, 화학분석, 대기환경, 소음진동
	산업기사	건설재료시험, 대기환경, 소음진동, 위험물
	기능사	건설재료시험, 화학분석, 위험물, 환경

* 지원서 접수 마감 전일('25.9.29)까지 취득한(합격일자 기준) 자격증에 한해 인정

[상세보기 #3] 채용 우대사항 및 가산점 부여 자격증 내역

□ 채용 우대사항

구분	대상	해당자	가 산 점 수	비 고
특별 우대 가산점	취업지원 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취업지원대 상자	서류, 필기, 면접전형 등 각 전 형별 만점의 5퍼센트 또는 10 퍼센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해당하는 가 점 등 적용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 및 중 증장애인	서류, 필기, 면접전형 등 각 전형별 만점의 5퍼센트 중증장애인은 서류 전형 만점의 5퍼센트를 추가 가산	중증장애인으로 선택한 경우 중증장애인확인서 발급 및 제출 가능해야함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의 국 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대상자	서류전형 만점의 5퍼센트 서류전형 만점의 5퍼센트	지원자 본인 명의의 수급자 증명서만 인정 지원자 본인 명의의 수급자 증명서만 인정
	이전지역인재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이전지역(경남·울산)인재	서류전형 만점의 5퍼센트	
	북한이탈 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북한이탈주민	서류전형 만점의 5퍼센트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의 다문 화가족	서류전형 만점의 5퍼센트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아동)	「아동복지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자	서류, 필기, 면접전형 등 각 전 형별 만점의 5퍼센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청년에 한해 적용'
일반 우대 가산점	자격증	고급자격(사무), 기술사(기술), 건축사(건축)	서류전형 면제	고급자격 : 한국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세무사, 변호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국제 재무분석사(CFA) 3차합격
			필기전형 만점의 10퍼센트	
			면접전형 만점의 5퍼센트	
	수상경력	공모전 1등상 수상자	서류전형 면제 및 필기전형 만점의 5퍼센트	※ 가산점 부여 공모전 - 대학생주택건축대전, 국토기술대전(舊국토개발 기술대전) ※ 수상팀당 2인까지 인정 ※ 필기전형 가산점은 작품 제출 50팀 이상 시 적용
공모전 2등상 수상자		서류전형 면제 및 필기전형 만점의 3퍼센트		
공모전 3등상 수상자		서류전형 면제		
공모전 4등상 수상자		서류전형 면제		
청년 인턴 가산점	청년인턴 경험자	탁월 청년인턴으로 선발된 자	서류전형 면제 및 필기전형 만점의 3퍼센트	※ 지원한 청년인턴 채용공고 문에 고지된 가산점과 상이한 경우, 청년인턴 공고문 기준에 따르며 유효기간 내 1회에 한함
		우수 청년인턴으로 선발된 자	서류전형 면제	
		성실 청년인턴으로 선발된 자	서류전형 만점의 5퍼센트	

- * 특별우대가산점은 본인에 가장 유리한 가산점 1개만 인정하고, 일반우대가산점은 대상별로 각 1개만 인정 하며 대상별로는 가산 점수가 적용되는 각 전형단계별로 중복하여 적용
- * 특별우대가산점과 일반우대가산점 및 청년인턴 가산점은 각각 인정하여 합산
- * 취업지원대상자가 일반지원자와 경쟁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3인이하 모집분야는 가점 미적용.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 이하인 경우에는 적용
- * 수상경력은 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3년 이내 수상한 실적만 인정하며, 우대는 3년 내 1회에 한함
- * 수상경력 가산점은 공모 시 가산점 부여조건을 명시한 경우에 한하여 모집분야 해당자에게 가산점을 부여
- * 서류전형 면제는 지원자격을 충족한 지원자에 한해 적용
- * 우대사항 중 위에서 언급하지 않은 가산점은 지원서 접수 마감 전일(25.9.29)까지 취득한(합격일자 기준) 자격에 한해 인정
-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청년'은 지원서 접수 마감 전일(25.9.29)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지원자에 한함(출생일 : 1990.9.30.~2007.9.29)

□ 채용 우대사항이 적용되는 고급자격증 목록 및 적용기준

모집분야		해당 고급자격증 및 분야
사무직	행정	한국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세무사, 변호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국제재무분석사(CFA) 3차합격
기술직	토목군	토목 (기술사) 농어업토목, 토목구조, 토질 및 기초, 도로 및 공항, 상하수도, 수자원개발, 지적, 지질 및 지반, 철도,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토목 시공, 토목품질시험, 항만 및 해안, 해양, 건설안전
		조경 (기술사) 조경, 자연환경관리
	건축군	건축 (기술사) 건축구조,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건축사) 건축사
		기계 (기술사) 건축기계설비, 기계, 건설기계, 공조냉동기계, 산업기계설비, 소방, 가스
		전기 (기술사) 건축전기설비, 발송배전, 전기응용, 소방, 전기안전, 정보통신
		화공 (기술사) 화공, 건축품질시험, 토목품질시험, 소음진동

* 자격증 가산점은 종류, 개수에 상관없이 가장 높은 가산점 1개만 적용

* 가산점은 지원서 접수 마감 전일(25.9.29)까지 취득한(합격일자 기준) 자격에 한해 인정

[상세보기 #4] 블라인드 위반 관련 내용

□ 블라인드 채용 미준수 : 블라인드 처리

① 개인 신상정보 : 기재불가

- 출신학교, 출신지, 나이, 성별, 신체조건, 혼인여부, 종교, 이름, 가족관계, 재산 등

구분	위반사항	위반 예시
위반 시 블라인드 처리	출신 학교	(기준) 출신학교를 언급하는 내용을 작성할 경우 (위반 예시) - 한국 대학교 건축학과를 졸업한 저는 설계에 관한 부분을 ~ - 저는 한국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
	출신지	(기준) 출신지를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내용을 작성할 경우 (위반 예시) 부산에서 태어나 부산을 빛낼 수 있는 업무가 하고 싶어 ~
	나이	(기준) 나이를 직접적으로 드러내거나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작성할 경우 (위반 예시) - 저는 ~ 29세 지원자입니다. - 제가 22세가 되던 해에 평창올림픽이 개최되어 자원봉사를 ~
	성별	(기준) 의무복무에 관한 내용(병장, 카투사, 의경, 병사) 등 특정 성별을 드러내는 단어를 사용하여 성별이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경우 (위반 예시) - 카투사로 활동하며 회화 실력이 향상되었으며 ~ - (통신병, 운전병 등(간부가 아닌 병사의 보직))으로 복무하며 ~ - (훈련병, 이병, 일병, 병장)시절 훈련중에 ~ - 언니, 오빠들의 친한 동생이 될 수 있었으며 ~ - 행복주택 사업에 사촌 형이 수혜 대상이 되어 ~
	신체 조건	(기준) 신체조건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작성할 경우 (위반 예시) 185cm가 넘는 큰 키를 이용하여 ~
	혼인 여부	(기준) 혼인여부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작성할 경우 (위반 예시) 결혼 후 남편과 함께 생활을 하며 ~
	종교	(기준) 종교를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내용을 작성할 경우 (위반 예시) - 교회 청년부로 활동하며, 실수를 연발해 목사님에게 혼나기도 했지만 ~ - 성당에서 미사를 드리며 마음의 안정을 얻고 ~ - 사찰에 가서 스님들, 보살님들과 함께 신자님들을 돕다보니 ~
	이름	(기준) 인적사항 입력란 외에 심사위원이 볼 수 있는 자기소개서 본문에 자신의 이름을 작성할 경우 (위반 예시) - 입사 후에도 차질 없이 진행하는 신입사원 홍길동이 되겠습니다. - 아이디어뱅크 홍길동이 되고 싶어 ~ - "친절한 길동씨"라고 불리곤 했습니다.
	가족 및 친인척 재직 정보	(기준) 가족 및 친인척의 LH 및 유관기관 재직정보를 직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작성할 경우 (위반 예시) - 국토교통부에서 근무하시는 부모님의 영향을 받아 ~ - LH에 재직 중인 이모부의 말씀을 듣고 ~

② 경력 및 경험사항 : 기관명 기재 가능(부서명 및 위치 함께 기재 불가)

구분	기재사항	위반 예시
기재가능	기관명 또는 부서명	<p>(기준) 자기소개서 및 경력·경험 란에 기관명이나 부서명 중 1개 기재 가능 (허용 예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체험형 인턴으로근무를 하면서 ~ - 도로공사에서 토목감독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 - ○○전자 기획실에서 전략수립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
위반 시 블라인드 처리	기관명 + 부서명	<p>(기준) 자기소개서 및 경력·경험 란에 기관명과 부서(지사)명을 함께 기재 할 경우 (위반 예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토지주택공사 강남권주거복지지사에서 인턴으로 근무 하면서 ~ - 한국전자 기획실에서 전략수립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

* (경력사항) 금전적 보상을 받은 경우(직장근무, 공모전 입상 등)

* (경험사항) 금전적 보상이 없는 경우(학술연구, 시민단체, 봉사단체 등)

[상세보기 #5] 지역인재 상세내역

□ 이전지역인재 상세내역

1. 지역인재 개념

- (정의) 최종학력(대학원 이상 제외) 기준 경상남도, 울산광역시 소재 학교 졸업(예정)자
 - 이전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다른 지역에서 대학을 졸업(예정)인 자는 제외
 - 이전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다른 지역 대학에 재학(휴학)중인(졸업예정자 제외) 자는 포함

※ 대학 졸업예정자의 범위 : 4년(4년제의 경우 4년=8학기, 5년제의 경우 5년=10학기, 전문대학의 경우 2년=4학기)이상 등록하고, 최종학기 수강신청학점을 포함해서 졸업학점에 도달된 자로서, 재학 중인 학교의 학칙에 따라 졸업예정자로 인정되어 서류접수 마감일 기준 졸업예정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야 하고, 공사에서 요구하는 시점에 제출 할 수 있어야 함.

※ 이전지역 : 본사 이전지역인 경상남도, 울산광역시를 말하며 부산광역시를 제외함.

2. 이전지역 대학의 범위 : 본사 이전지역에 소재한 아래의 학교(이전지역인재 채용목표제 운영지침에 따름)

- ①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하며, 이전지역에 소재하는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사이버대학은 제외), 기술대학, 각종학교 등의 본교
 - *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지역대학 중 이전지역에 소재하는 지역대학은 이전지역 학교에 포함
- ② 「고등교육법」 제24조에 따른 분교 및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지방캠퍼스(이원화 캠퍼스)
 - * 본교와 다른 이전지역에 분교 및 이원화 캠퍼스가 위치한 경우, 해당 캠퍼스가 위치한 시·도의 지역인재로 포함되며, 이 경우 이전지역에서 대학교를 졸업, 졸업예정인 것으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 ** 이전지역이 아닌 지역에 위치한 이원화 캠퍼스 중 본교가 이전지역에 위치한 경우에는 이원화 캠퍼스도 본교가 위치한 시·도의 지역인재로 포함
- ③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 ④ 특별법으로 설치된 다음 학교는 졸업 후 임용이 보장되고 일정기간 복무의무를 지며 국고에서 학비를 부담하므로 소재지에 관계없이 제외
 - ㉠ 「경찰대학 설치법」에 의한 경찰대학(경기)
 - ㉡ 「사관학교 설치법」에 의한 육·해·공군사관학교(서울·경남·충북)
 - ㉢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에 의한 국군간호사관학교(대전)
 - ㉣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에 의한 육군 제3사관학교(경북)
- ⑤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 ※ 외국학교 및 지방에 있는 외국학교의 분교는 제외

3. 이전지역인재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의 범위(이전지역인재 채용목표제 운영지침에 따름)

(1) 다음의 이전지역대학 졸업(예정)자

- ㉓ 이전지역에 위치한 『고등교육법』상의 학교와 과학기술 대학을 졸업한 경우
 - ㉔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경우 이전지역에 위치한 소정의 학교에서 전 기간을 수강하고 졸업한 경우
- (2) 이전 지역인재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아래 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하거나 졸업 예정인 사람 또는 열거된 학력을 보유한 사람은 해당 학력을 제외한 최종 학력이 이전지역 학교일 경우
- ㉓ 「고등교육법」, 특별법 등 교육관계 법령에 규정된 대학원
 - ㉔ 「고등교육법」에 규정된 사이버대학
 - ㉕ 「평생교육법」에 규정된 평생교육기관
 - ㉖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제6조에 의한 독학학위 취득자
 - ㉗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학위 취득자
- (3) 학교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 ㉓ 수도권 소재 학교 및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소재 학교가 이전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이전하는 시점 이전 졸업자는 이전 지역인재에서 제외
 - ㉔ 지방소재 학교가 수도권으로 이전하였거나 이전지역 밖으로 이전한 경우, 이전하는 시점 이후 입학자는 수도권 또는 이전지역 밖의 학교를 졸업하거나 졸업예정인 것으로 보아 이전 지역인재에서 제외

< 예 시 >

- <본교의 위치와 분교·지방캠퍼스의 위치가 다른 경우>
 - 본교가 수도권에 위치하고, 분교·지방캠퍼스가 지방에 위치한 경우 : 분교·지방캠퍼스는 지역인재에 해당
 - 본교가 지방에 위치하고, 분교·지방캠퍼스가 다른 지방에 위치한 경우 : 분교·지방캠퍼스는 해당 캠퍼스가 위치한 곳의 지역인재에 해당
 - * 부산대 본교는 부산에 위치, 지방캠퍼스인 양산캠퍼스의 경우 경남에 위치하므로, 본교 학생은 부산, 양산캠퍼스 학생은 경남의 지역인재에 해당
- <이전지역 대학교와 타 지역 대학교를 모두 졸업한 경우>
 - 이전지역 대학 졸업 후 다시 서울 소재 대학 졸업 : 해당
 - 타 지역 대학 졸업 후 다시 이전지역 대학 졸업(예정) : 해당
- <대학 졸업 후 다른 대학에 재학중인 경우>
 - 이전지역 대학 졸업 후 다시 타 지역 대학에 편·입학하여 재학중 : 해당
 - 타 지역 대학 졸업 후 다시 이전지역 대학에 편·입학하여 재학중 : 비해당
 - ※ 다만, 이전지역 대학에 편·입학하여 졸업한 후에는 이전지역 인재에 해당
-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수강지역대학을 변경한 경우>
 - 타 지역 대학에서 수강하다가 이전지역 대학으로 수강지역 변경 : 비해당
 - 이전지역 대학에서 수강하다가 타 지역 대학으로 수강지역 변경 : 비해당
- <대학 중퇴 후 다른 대학에 재학 중인 경우>
 - 이전지역 대학 중퇴 후 다시 타 지역 대학에 편·입학하여 재학중 : 비해당
 - 타 지역 대학 중퇴 후 다시 이전지역 대학에 편·입학하여 재학중 : 비해당
 - ※ 다만, 이전지역 대학에 편·입학하여 졸업한 후에는 이전지역 인재에 해당
- <경찰대학·사관학교를 중퇴한 경우>
 - 이전지역 소재 고등학교 졸업 후 경찰대학·사관학교 중퇴자 : 해당
 - 타 지역 소재 고등학교 졸업 후 경찰대학·사관학교 중퇴자 : 비해당
- <대학 졸업 후 대학원을 재학 또는 졸업한 경우>
 - 이전지역 대학 졸업 후 타지역 소재 대학원 재학 또는 졸업 : 해당
 - 타 지역 소재 대학 졸업 후 이전지역 대학원 재학 또는 졸업 : 비해당

□ 지역균형인재 상세내역

1. 지역균형인재의 범위

- 지역균형인재 : 학위과정 유형(학사, 석사, 박사)을 불문하고 지방대학에 재학 중인 자에 해당하며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인 자는 **지역균형인재에 포함되지 않음**

2. 지방대학의 판단

가. **(지방대학의 판단)** 지방에 소재하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원격대학 및 각종학교 제외)

- (1) 지방에 소재하는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의 본교
- (2)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고등교육법」 제24조에 따른 분교
 - * 지방대학에 해당하는 분교 : 연세대(원주), 동국대(경주), 건국대(충주), 고려대(세종)
 - * 교지분리대학(이원화 캠퍼스)은 분교와 달리 본교와 분리된 별도의 대학으로 볼 수 없으므로 본교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지방대학 여부를 판단
- (3) 개별법에 따라 설치된 다음의 고등교육기관은 **지방대학에 해당하지 않음**

개별법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
㉠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 「경찰대학 설치법」에 따른 경찰대학
㉥ 「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른 육·해·공군사관학교
㉦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른 국군간호사관학교
㉧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른 육군 제3사관학교
㉨ 「국방대학교 설치법」에 따른 국방대학교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에 따른 한국전통문화대학교
㉪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에 따른 한국농수산대학교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폴리텍대학 등

- (4) 지방 소재 원격대학 및 각종학교는 **지방대학에 해당하지 않음**
 - * 한국방송통신대학의 지방 소재 지역대학은 지방대학에 해당하지 않음에 유의

나. **(권역구분)** 권역 구분 없이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지역대학에 재학 중인자는 **지역균형인재로 인정**

- * 이전지역인재와 달리 경남·울산 외의 비수도권 지역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자는 지역균형인재에 해당